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재 외 공 관 무 관 주 재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수 무관을 활용하기 위해 무관 임기를 조정하고 재외무관 정원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우수 무관 활용을 위해 “임기(제8조)” 조정

1) 우수 무관을 활용하기 위해 무관의 기본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재외무관 근무 활성화 여건 마련

2) 임기의 연장 및 단축 기준을 기존 ‘1년 범위내에서’ 에서 ‘1년 단위’로 개정함으로써, 우수인력에게 연장근무 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인력 활용을 도모

나. 장성급 장교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별표 주재무관 정원표 하단에 비고로 제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기획예산처 등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추진

대통령령 제 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년의 범위에서”를 “1년 단위로”로 한다.

별표 비고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장교의 정원 총원 범위 내에서 군별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17 다음에 “비고”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기)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임기) ---------- 2년-------. ---------- ---------- 1년 단위로 ---------- ----------.

신·구정원대비표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별표]

주재무관 정원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비고 국방부 장관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장교의 정원 총원 범위 내에서 군별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신 설> <신 설>	· · 비고 국방부 장관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장교의 정원 총원 범위 내에서 군별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비고 + 국방부 장관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장교의 정원 총원 범위 내에서 군별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연 락 처	(02) 748 - 2151